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5. 6. 20(금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 정 재 경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11호
- 나. 제 출 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금천구 통·반과 통장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관련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 및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통·반과 통장 업무에 대한 구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통·반의 명칭 및 구역과 통장 현황 공고 규정 신설(안 제3조제2항)
- 나. 통장 임명결과 공고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금천구 통·반과 통장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관련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 및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통·반과 통장 업무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통·반의 명칭 및 구역과 통장 현황을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,
 - 안 제3조의 2에서는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을 임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신설 규정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통·반 및 통장 현황과 그 변동사항 등을 공고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, 이에 따라 주민의 신뢰 제고와 참여 확대,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[이하 “행정면”(行政面)이라 한다]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20.>